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7 선고 2019가단249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(변경전 상호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)

2. D

3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, D은 연대하여 80,394,520원과 그 중 80,000,000원에 대하여,
나.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, E는 연대하여 73,974,631원과 그 중 73,611,615원에 대하여
각 2018. 9. 29.부터 2019. 3. 1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청구원인 제5항 제5행의 '73,611,615원'은 '73,974,631'원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준구

별지